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4. 1. .

국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3년 9월 18일, 한기호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3년 9월 1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국방위원회(2023.11.15.)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23.11.21.)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

제9차 국방위원회(2023.11.23.)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수정)

2. 제안설명의 요지

(한기호 의원)

현행법상 지자체가 설치한 초소 등의 대체시설은 국가에 양여가 불가하고, 이로 인해 지자체가 대체시설 유지비용을 지속적으로 부담하여야 함에 따라, 관할부대·지자체간 대체시설 제공을 조건으로 한 민통선·군사보호구역 조정 협의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접경지역은 군사보호구역이 군사분계선에서부터 거리개념으로 지정되어 있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황으로 넓게 퍼져있는 지역은 보호구역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나, 지자체가 설치한 대체시설 소유권을 軍이 인계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民·軍간 통합적 협력 관계 구축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지자체 공유재산을 국가에 양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지자체의 대체 시설 등의 제공을 조건으로 한 원활한 군사보호구역 완화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1항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천우정)

개정안은 지자체가 군에 제공하는 대체 시설이 공유재산인 경우 이를 국가에 양여(소유권 이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는 관계로,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대체 시설 등의 유지 및 관리를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희망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완화 협의는 지연될 수밖에 없었음.

이에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국가에 양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대체 시설 등의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하여 국가가 정식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체 시설 등의 소유권 및

관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병주)

개정안은 지자체의 군 대체시설을 국가에 양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대체시설’을 ‘대체 시설’로 수정하여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내용

약간의 자구수정이 있었음

[붙임]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3. 11. .

제 안 자 : 국방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개정안의 ‘대체시설’을 동 법의 ‘대체 시설’이라는 표현과 동일하게
‘대체 시설’로 수정하려는 것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3조제11항 “대체시설 설치”를 “대체 시설 설치”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① ~ ⑩ (생략)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① ~ ⑩ (현행과 같음)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① ~ ⑩ (현행과 같음)
<신설>	<u>⑪ 지방자치단체가 제6항에 따라 대체 시설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체 시설 등을 국가에 양여할 수 있다.</u>	⑪ ----- ----- <u>대체 시설 설치</u> ----- ----- ----- ----- ----- ----- ----- ----- -----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⑪ 지방자치단체가 제6항에 따라 대체 시설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체 시설 등을 국가에 양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 시설 등의 양여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설치되어 있는 대체 시설 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① ~ ⑩ (생략) <u><신설></u>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① ~ ⑩ (현행과 같음) <u>⑪ 지방자치단체가 제6항에 따 라 대체 시설 설치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 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 및 제40조에 도 불구하고 해당 대체 시설 등을 국가에 양여할 수 있다.</u>